

[ 의결번호 ] 국세청납보 2020 020

[ 심의결과 ] 시정

[ 심의유형 ] 조사중지

[ 세 목 ] 증여세

[ 제 목 ]

본인의 질병 치료로 인해 세무조사 진행이 불가능함을 사유로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조력 등을 통해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중지를 불승인한 조사청의 통지가 위법·부당한지

[ 결 정 ]

이 건 권리보호 심의 요청은 요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정 결정한다.

[ 이유 ]

중병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청의 세무조사 중지신청 불승인 통지는 부당함

[ 심의개요 ]

불임과 같음

[ 관련법령 ] 「국기법」§81조의3, 「국기법」§81조의8

## 1. 권리보호요청 개요

- 요청인은 ○○도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이하 '발행 법인')은 '13. 11월 설립된 비주거용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요청인은 '12년과 '17년에 2차례 암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후복막 지방 육종암 4기' 상태로 항암치료 중임
-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함) 조사2국은 '요청인이 '18. 4. 19. 특수관계에 있는 △△△으로부터 발행법인의 주식 ○○,○○○주를 시가 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액으로 양수한 사실과 관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사유로 증여세 세무조사(이하 '쟁점 세무조사'라 함)를 실시할 것임을 '20. 7. 20. 요청인에게 통지하였음
- 조사청은 '주식양수도 대금수수여부 관련 금융조회 등 사실관계 파악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을 사유로 '20. 8. 13. ~ '20. 9. 9.에서 '20. 8. 13. ~ '20. 10. 14.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통지를 하였음
- 요청인은 '질병치료 및 심신미약으로 인해 세무조사가 곤란함'을 사유로 '20. 9. 16.부터 '21. 3. 15.까지 6개월간의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였으며, 조사청은 '20. 9. 16. '세무대리인이 조력을 반아 조사 진행이 가능하는 등 중지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을 이유로 세무조사 중지 신청에 대해 불승인을 통지(이하 '쟁점 불승인 통지'라 함) 함
- 요청인들은 쟁점 불승인 통지가 부당하다며 권리보호 요청함

## 2. 요청인 주장

- 요청인은 '후복막 지방육종암(4기)'이 재발하여 올 2월초부터 약물 및 방사선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서 '20. 8. 13.부터 '18년 귀속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혐의로 증여세 조사를 받고 있음
- 본인 주장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발행법인 방문이나 당시 실무자, 계약서 상 관련인 확인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직접 해야 하나 현재 암이 4기로

접어든 상태에서 주치의의 소견과 같이 6개월 정도면 재발에 따른 항암 치료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간만이라도 세무조사를 중지 해주기를 요청드림

### 3. 조사청 의견

- 발행법인의 '18사업연도 주식변동에 대해 요청인이 특수관계자인 △△△(양도당시 발행법인 사내이사, 지분율 30%)으로부터 주식 ○○,○○○주를 시가(전산간이평가액 @○○○,○○○원)보다 현저히 낮은 액면가액(@○○○원)에 저가 양수한 혐의에 대해 요청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 진행 중임
- 요청인은 신용불량자라는 전 남편(안○○)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급여를 수령한 것이라 주장하며, '20. 9. 1. ○○경찰서에 고발서를 접수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오는 시점(약 3~6개월 후) 까지 세무조사 중지를 구두 요청하였으나,
- 이는 조사가 약 20일 진행된 시점의 명의도용 주장이었고 관련 내용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세무조사의 중지는 어렵다는 점을 얘기하였고, 조사팀이 신청한 조사기간 연장 승인 이후, 기간연장 통보 공문을 발송하자 요청인은 본인 질병을 사유로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함
- 요청인이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긴 하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세무대리인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고 주식변동조사는 납세자와 직접 접촉 없이 금융변동 내역 등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 본 건도 조사 착수 이후 요청인의 방문 없이 수임 세무대리인이 소명 요구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현재와 같이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세무조사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4. 쟁점

- 본인의 질병(암) 치료로 인해 세무조사 진행이 불가능함을 사유로 세무

조사 중지를 신청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조력 등을 통해 세무조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중지를 불승인한 조사청의 통지가 위법·부당한 지

## 5. 사실관계

- 가. 요청인은 ○○도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후복막 지방육종암 4기' 상태로 '12. 9. 28. 및 '17. 3. 6. 2차례 암 수술을 받고 세무조사 전부터 지속적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음
- 나. 조사청에 따르면 양도인은 '18. 4. 19. 요청인에게 발행법인 주식 ○○, ○○○주를 액면가액인 주당 ○○○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발행법인의 '18.4.19. 기준 국세청 대내포털(NTIS) 상 주식 전산간이평가 금액은 주당 ○○○,○○○원으로 확인됨
- 다. 조사청에 따르면 주식양도 당시 양도인은 발행법인의 사내이사이며, 요청인은 '14년~'19년 기간 발행법인에서 근로소득 ○○○백만원이 발생하여, 양도인과 요청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라. 요청인은 조사청에 '후복막 지방육종암(4기)'이 재발하여 올 2월초부터 약물 및 방사선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현재 임이 4기로 접이든 상태에서 주치의의 소견과 같이 6개월 정도면 재발에 따른 항암치료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간만이라도 세무조사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함
- 마. 요청인의 세무조사 중지신청에 대한 조사청은 명의도용을 주장하던 중 질별을 이유로 조사중지 신청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 진행이 가능하는 등 중지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세무조사 중지신청에 대해 불승인 통보함

## 6. 판단

- 가. 조사청은 요청인의 전 남편의 명의도용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한 상황이며,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충분히 조사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나

- 나. 요청인은 2차례의 암 수술을 받고난 후 전이로 인해 현재 암이 4기로  
접어든 상태에서 세무조사 전에도 지속적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이  
의사소견서 및 병원에서 작성한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것을 볼 때 요청인은  
중병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
- 다. 또한, 요청인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별다른 증빙이 없고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은 요청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사청의 세무조사 중지 불승인 통지는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임